

세액공제신청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------	-----	------	----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	

(전화번호:)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신청 내용	⑥ 구	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⑩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	영 제4조제8항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1				
⑩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6조의4제4항		14Z				
⑩③ 대·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4항		14M				
⑩④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8항		18D				
⑩⑤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2항		18L				
⑩⑥ 교육기관 무상기증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7조의2제16항		18R				
⑩⑦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3L				
⑩⑧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0E				
⑩⑨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조제14항		13M				
⑩⑩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6A				
⑩⑪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0D				
⑩⑫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조제14항		16B				
⑩⑬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제6항		176				
⑩⑭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3제14항		14T				
⑩⑮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조의4제12항		14U				
⑩⑯ 벤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2조의2제5항		18E				
⑩⑰ 소재·부품·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	18N				
⑩⑱ 소재·부품·장비 외국법인 등 인수 세액공제	영 제12조의3제15항		18P				
⑩⑲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	영 제17조제5항		18H				
⑩⑳ 통합투자세액공제 (일반)	영 제21조제13항		13W				
㉑ 통합투자세액공제 (신성장·원천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3X				
㉒ 통합투자세액공제 (국가전략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3Y				
㉓ 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3Z				
㉔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(일반)	영 제21조제13항		1B1				
㉕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신성장·원천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B2				
㉖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 (국가전략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B3				
㉗ 임시 통합투자세액공제(반도체분야 국가전략기술)	영 제21조제13항		1B9				
㉘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7항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I				
㉙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4				
㉚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2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77				
㉛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3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A				
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	영 제22조의4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2				
㉝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5	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6				

⑥ 구 분	⑦ 근거법령	⑧ 코드	⑨ 공제율	⑩ 대상세액	⑪ 공제세액
⑬ ³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6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35			
⑬ ³⁵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8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B			
⑬ ³⁶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9 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8B			
⑬ ³⁷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기본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8C			
⑬ ³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(추가공제)	영 제22조의10제6항	1B8			
⑬ ³⁹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2조의11제5항	1B7			
⑭ ⁴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	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	14N			
⑭ ⁴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2제3항	14S			
⑭ ⁴²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4X			
⑭ ⁴³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	영 제26조의3제6항	18J			
⑭ ⁴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4제17항	14Y			
⑭ ⁴⁵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5제11항	18A			
⑭ ⁴⁶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6조의7제10항	18F			
⑭ ⁴⁷ 통합고용세액공제	영 제26조의8제11항	18S			
⑭ ⁴⁸ 통합고용세액공제 (정규직 전환)	영 제26조의8제11항	1B4			
⑭ ⁴⁹ 통합고용세액공제 (육아휴직 복귀)	영 제26조의8제11항	1B5			
⑭ ⁵⁰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27조의3제3항	18K			
⑮ ⁵¹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	법 제30조의2제4항 (2022.12.31.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H			
⑮ ⁵²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4Q			
⑮ ⁵³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	법 제30조의4제5항	18G			
⑮ ⁵⁴ 상환대료를 인정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6조의3제8항	10B			
⑮ ⁵⁵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99조의11제4항	18Q			
⑮ ⁵⁶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(납세의무자)	영 제104조의5제6항	184			
⑮ ⁵⁷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(세무법인)	영 제104조의5제6항	14J			
⑮ ⁵⁸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14제2항	14E			
⑮ ⁵⁹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	영 제104조의15제6항	1B6			
⑮ ⁶⁰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0제5항	14O			
⑮ ⁶¹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2제3항	14P			
⑮ ⁶²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1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I			
⑮ ⁶³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2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K			
⑮ ⁶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	법 제104조의18제4항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4R			
⑮ ⁶⁵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산업자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7제3항	18M			
⑮ ⁶⁶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04조의29제2항	10C			
⑮ ⁶⁷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	영 제104조의32제5항	1F1			
⑮ ⁶⁸ 금사업자와 스크램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	영 제117조의4제4항	14W			
⑮ ⁶⁹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	법 제126조의7제13항	14V			
⑮ ⁷⁰ 세액공제 합계		1A3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,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.
2.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.
3. ⑩ 대상세액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.
4. ⑪ 공제세액란: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⑦ 근거법령란에서 ‘법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‘령’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합니다.